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 최초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 2026.08.20.(목)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13]

1. 건설위치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19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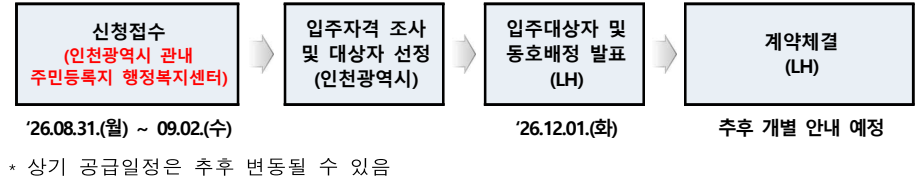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7.이후 입주자모집부터 동일유형의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속지사항] 및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갈산2단지)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1개 공급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인천검단 AA19블록은 영구임대주택(332호)과 국민임대주택(991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선정시점에 조회된것으로 적용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 소득·자산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의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④**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 형태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총계	332	66	160	106							
26A	226	66	160	-	26.65	14.3680	3.5404	12.3506	56.9090	철근 콘크리트	'27.11 (예정)
26B (주거약자용)	106	-	-	106	26.65	14.3680	3.5404	12.3506	56.9090	/지역난방	

- 공급형태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 또는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우선 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선정된 동일유형(예, 영구↔영구)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027년 11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해당주택 전세대에 소형냉장고, 세탁기, 벽걸이형 에어컨, 하이라이트 2구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 (2026년 8월 현재기준)

공급 형별	구분	임대조건(원)				전환 가능 보증금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100%)	계약금(5%)	잔금(95%)				
26A 26B (주거 약자용)	「가」군	2,847,000	142,000	2,705,000	56,680	(+) 5,000,000	7,847,000	31,680
						(-) 1,000,000	1,847,000	59,590
	「나」군	16,480,000	824,000	15,656,000	134,410	(+) 16,000,000	32,480,000	54,410
						(-) 12,000,000	4,480,000	169,410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급형별의 임대조건은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5.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위안부 피해자(다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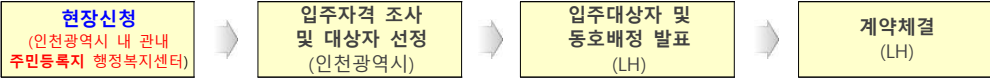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인천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우선·일반 주거약자	‘26. 08. 31.(월) ~ 09. 02.(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신청 불가)	‘26. 12. 01.(화)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LH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 갈산2단지)과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 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또는 해약 물량 발생 시 부여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계약 체결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추첨을 통하여 무작위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시 :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아래 [12.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 대 구 성 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구성원</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body> </table>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외 국 인 배 우 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 <td>외 국 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 <td>태 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외 국 인 배 우 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 국 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외 국 인 배 우 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 국 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정적 처리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 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7페이지 예시 참고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2대 이상 합산),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6페이지 예시 참고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입주자격 구분 ([5. 입주자 선정 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60%	245,000,000	45,420,000
		1인	7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50%	245,000,000	45,420,000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2인	0인	80%	245,000,000	45,420,000
		1인	90%	270,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70%	245,000,000	45,420,000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가구 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기준임(23.3.28.)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를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 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불법전대자 입주자적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5-1.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정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5-3.주거약자용 주택(26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참고)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태	우선공급				
	합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계	66	22	22	22	-
26A	66	22	22	22	별도배정 호수 없음
26B (주거약자)	-	-	-	-	-

※ 우선공급 대상 중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구분	입주자적	임대조건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 기준에 따른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다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가」군
마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 주 자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8.20.(목))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③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① 1순위 내 경쟁 시 : 추첨 ② 2·3순위 내 경쟁 시 : 아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table><tr><th>구분</th><th>3점</th><th>2점</th><th>1점</th></tr><tr><td>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td><td>3명 이상</td><td>2명</td><td>1명</td></tr><tr><td>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td><td>3년 이상</td><td>1년 이상 3년 미만</td><td>1년 미만</td></tr><tr><td>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td><td>24회 이상</td><td>12회 이상 24회 미만</td><td>6회 이상 12회 미만</td></tr><tr><td>(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td><td>3년 이내</td><td>3년 초과 5년 이내</td><td>5년 초과 7년 이내</td></tr><tr><td>(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td><td>2세 이하</td><td>3세 또는 4세</td><td>5세 또는 6세</td></tr></table>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한부모가족만 적용)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6-000413]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조회방법</th></tr> <tr> <td>인터넷이 가능할 경우</td><td>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선택 →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명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td></tr> <tr> <td>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td><td>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td></tr> </table>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선택 →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명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선택 →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명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청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 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양부부 임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 주 자 선정순위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우선공급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제2호가목) 및 귀환국군포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 13페이지 배점기준표 참조)	➡	인천광역시 전입일자 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10페이지 배점과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적용

5-2. 일반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입주자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자.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에 의거,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공급하는 경우 [별표3] 1호 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공급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 13페이지 배점기준표 참조)	➡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배점기준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제2호가목) 및 귀환국군포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사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1 (유형 1가지)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5-3. 주거약자용주택(26B형) 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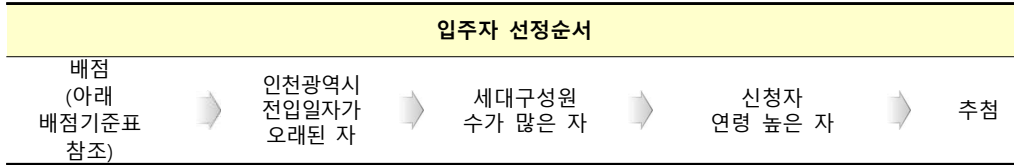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순위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직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금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1~3순위만 모집합니다.**
-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총계		9
1. 신청자 나이 (2점)	만70세 이상	2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목))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별지7,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7,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비고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1-1 별지1-2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별지3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합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4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5 1통

해 당 자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 확인서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부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등 확인서 등)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명서류	관련기관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혼부부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별지6-1),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별지6-2),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배정 관련 서류)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압)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중증장애인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희망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해당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공통 제출서류로 같음)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26. 12. 01.(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임)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키출출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새롭게 추가 제출해야 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단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만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인감 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입주대상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않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계약 전 미리 납부 하신 후 계약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연이율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연이율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신청 자격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 해제, 갱신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임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임주전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양부부 임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
신청 일정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 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구분	유의사항
및 계약 안내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입주 불가)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 및 그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 기준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여건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1039호)로 변경 승인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19BL)'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 조건이행,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생활편의시설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당해지구에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위치한 금정로, 동화시로, 승가로, 고산후로 등 도로에서 소음, 빛공해,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확정된 철도시설, 도로시설, 환승시설 등은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통행제한) 및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제영향평가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 또는

구분	유의사항
	설치 위치, 제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저공비행으로 인한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외 구간 정비사업은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주변 인천 검단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특수학교, 공영차고지, 석유, 전기,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한 주유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는 관할 교육청 소관으로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공고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인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외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확정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주변을 방문하여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혐오시설 유무 및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 등에 표시된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건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색채, 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 지붕은 평지붕으로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6개동, 주차 가능 구역은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주차대수는 총 905대이며(근린생활시설 주차 4대 미포함), 이중 28대는 장애인주차장, 63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완속 콘센트 충전기 59대, 급속 충전기 2CH 2대), 90대는 경형주차장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는 지하2층 2.7m, 지하1층 2.3m입니다. -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향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단지 진입로(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차량출입 및 주차차단기가 적용됩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로 진입 가능한 주출입구 외부 도로가 왕복2차선 도로로 구성되어있어 단지 내 진입 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

구분	유의사항
	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배수, 옥외세정대, 기계실 펌프, 주차장 급배기환, 각동지하 배수펌프, 공용부위배관 동파방지 발열선 등 사용유지에 따라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요금 등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동 일부 전·후면 조정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붕층 및 4404동, 4405동, 4406동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설치 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 2에 의거하여 방송공동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4402동, 4404동, 4406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헬륨#1(지하1층)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부위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램프 포함)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 등)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인접세대에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됩니다.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제연헬륨, 재활용품보관소, 다목적 창고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경보음 발생으로 인한 소음 및 경광등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 시설물(소화전) 등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에서는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사용되며 저류조실 냄새 및 미세한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적

구분	유의사항
	정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및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비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 및 단지 외부 연결 보행통로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 및 단지레벨, 시설물, 보행통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시공구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경사지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 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계획상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운반 도중 시설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2층만 접근 가능하며, 지하1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됩니다. 4401동 지상1층에 게스트하우스가, 4403동 데크층 지상1,2층 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관, 4404동 데크층 키즈스테이션이, 4405동 데크층 커뮤니티센터Ⅲ(시니어라운지/생활지원센터), 4406동 데크층 지상1,2층 커뮤니티센터Ⅱ(피트니스/다목적실/스터디룸/독서실), 4403동과 4404동 사이에는 지상1층 커뮤니티센터Ⅰ(작은도서관/키즈카페/돌봄센터/어린이집)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시설 운영 및 실외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하며,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하이라이트 2구형)이 설치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마감재] - 세대 내·외부, 아파트 동 내·외부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6형은 전세대에 소형냉장고, 세탁기, 벽걸이형 에어컨, 전기쿡탑(하이라이트 2구형)이 설치될 예정이며, 29형, 37형, 46형은 전기쿡탑(하이라이트 2구)만 설치됩니다. 46형의 경우 거실 스탠드형 냉매 매립배관,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에어컨 슬리브가 시공됩니다. 26형의 경우 거실 벽걸이형 에어컨(빌트인)이 설치되며, 29형과 37형의 경우 거실 벽걸이형

구분	유의사항
	에어컨 설치를 위한 슬리브가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미세먼지 대응 등 환기성능 향상을 위해 세대 내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장치 필터는 일정주기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에 따라 전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화재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소방시설법에 따라 세대 현관에는 분말소화기가 각 1대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세대 평면구조에 따라 피난시설로 완강기 또는 발코니 경량벽체 등이 설치되며, 발코니 피난구 대피공간은 법정 피난통로이므로 입주 후 물건적치 및 인테리어 변경(막음 작업)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세대통합단자함은 미려형으로 설치합니다.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자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TV 등)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레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 및 가전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사이즈는 단열재의 두께 차이 및 마감재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불박이류(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 빌트인가전,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 - 주방 상부장이 랜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방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 배기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벽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아 인접 세대의 취사 시 냄새가 확산되어 역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급수급탕분배기 또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없습니다. [욕실]

구분	유의사항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입니다.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작동 직후에 뎀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욕실배기 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벽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아 인접세대로부터 냄새가 역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단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가 시공되어 세대 양변기 수압 만족도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거울, 수전 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어주시기 바라며, 실외기실에 물건 적치 시 공기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6㎡이하형은 거실에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에어컨이 설치되며, 26㎡초과형은 에어컨 냉매배관용 벽체 관통 슬리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층 및 저층부 세대 발코니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4403동의 일부층은 발코니 세대 칸막이벽 중 1면은 화재 시 비상탈출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칸막이벽으로 시공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항 - 팜플릿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당 주택면적, 계약면적, 실별면적 등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 라인에 따라 팜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폭염/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

구분	유의사항
	-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 방문(현장은 출입불가) 및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정, 식재 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인 전체의 공동 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당첨 후 계약기간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편의시설 설치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리모델링 등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급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옥상조경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설계 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대지는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 하므로 특정 입주자 또는 단체가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내 시설은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설계획 및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모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 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전의 도차,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자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인천점단 AA19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신 청 자 : (주)한국토지주택공사
 3.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원 내 AA-19BL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향충격을 차단성능	★★★★
2. 중앙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열수행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홀트노년층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정보설비	★
2. 계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한 국 부 동 산 원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기준 충족 여부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적합
창의 기밀성능		적합
고단열·고기밀 강제창호		적합
열원설비		적합
창 면적비		적합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분 설계기준	적합
	기계부분 설계기준	적합
	전기부분 설계기준	적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점단 AA19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디엘이앤씨(주) (676-87-01904) 금호건설(주) (104-81-31309) 대보건설(주) (313-81-02806) (주)HJ중공업 (602-81-42993) CNC종합건설(주) (123-81-56539)	-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에스아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주)지화기술단 (주)대성종합기술단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람(문의 : 032-890-5245)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추후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배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등

■ 주거약자용 주택(26B형) 편의시설 설치(선택품목)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 분	선택품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부엌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욕실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침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기타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선택품목) [주거약자용 외 주택(26A형)에 한함]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구분	선택품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주방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호봉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2. 무주택 확인 기준 및 소득 · 자산 항목 자료 출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리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제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회복지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건부 보호대상자명예수당 - 보건부 보호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배출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노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15. 문의처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지역본부

[별지 1-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우선공급-앞면, 신청자작성)

영구임대주택(일반/우선공급)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인천검단AA19블록 영구임대

전용면적

26㎡
(주거약차외)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전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우선공급

□(시행규칙 별표3 2호 가목)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 인 자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귀환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목)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 재부가 있는 자

□ 2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산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7년 이하)
(한부모가족만 : 가장 어린 자녀 나이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 5세 또는 6세)
① 혼인신고일()
②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시행규칙 별표3 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일반
공급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격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합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청 귀하

[별지 1-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우선공급-뒷면,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우선공급 중 다목·신혼부부에 적용)					
구분 및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3점	2점	1점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3명이상	2명	1명	▶ 재혼 시 전혼자녀 포함(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한함) ※태아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첨부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기준으로 산정 ▶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신혼부부만)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혼인기간	3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한부모만)가장어린자녀나이	2세이하	3세또는4세	5세또는6세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 우선공급 중 가족·국가유공자등에 적용)					
구분		배점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서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24			
	5년 이상 ~ 10년 미만	2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			
2. 신청자 연령 (25점)	15년 이상	3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만40세 미만	19			
	만40세이상 ~ 만50세 미만	21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만50세이상 ~ 만60세 미만	23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만60세 이상	25			
	1 ~ 2인	24			
	3인	26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4인	28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유형8: 귀환국군포로	
	5인 이상	30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7	11 (유형 1가지)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유형8: 귀환국군포로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명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 예비입주자증복불가사항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기타증빙서류			

[별지 1-2]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용)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인천검단 AA19블록 영구임대	전용면적	268㎡ (주거약자용)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전화() -	해당 시·도 /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회	주거약자용 ☐ (순위)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자살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인)			
※여기서부터 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분		배점	득점	배점기준			
1. 신청자 연령(2점)	만 70세이상	2		▶ 만 나이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3점)	1년 이상 ~ 5년 미만	1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					
4. 장애정도 (3점)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 예비입주자증복불가사항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배우자 포함)은 (신 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준에 선정되어 있던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함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대상 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자상위계증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정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뒷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입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입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	--------------------------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6-1]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신청단지명)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각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인 (1) : 대표신청인

- [illegible]

□ 신청인 (2) :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illegible]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u>신 청 단 지 명</u>)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 금융 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u>신 청 단 지 명</u>)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 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 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u>신 청 단 지 명</u>)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과 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 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6 년 일일 일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예비신희본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별지 6-2]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신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교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각 구성원의 비교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필수 기재)		-	(예시) 본인	
배우자 (필수 기재)		-	(예시) 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 분리세대 ☐
(예시) 부		-	(예시) 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

2026 년 일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임내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u>신 청 단 지 명</u>)영구임대주택 (신청 /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신청, 계약 중 해당란에 ○표			
2026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사본				